

## FSS/2112-13 : 선급금 허위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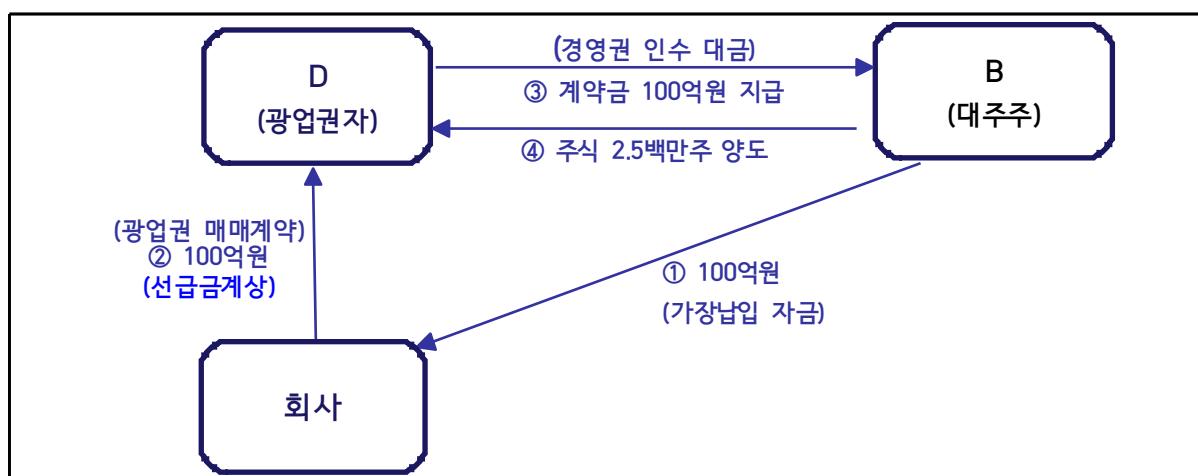
- 쟁점 분야: 선급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2014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1.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주주 B 및 前 대표 이사 C는 회사의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가장납입을 계획하고, B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11년 6월 자본금 100억원을 납입하였다.

’11년 7월 회사는 D와 ‘광업권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B 및 C는 D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는 B가 가장납입한 자금 100억원을 세차례에 걸쳐 광업권 매매를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D는 동 자금을 바로 인출하여 B에게 지급하고 회사 주식 2.5백만주(지분율 5%)를 양수하였다.

### 경영권양수도 계약 및 광업권 계약 흐름도



이후 D에게 경영권이 양도되지 않자 D의 요구로 ‘12년 1월 광업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C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회사는 ’11년 회계결산시 허위의 광업권 매매 잔금 연장계약 자료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여 선급금의 실재성을 주장하였다.

\* 선급금 100억원에 대한 내용은 없음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상 계약해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선급금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여 선급금을 100억원 과대계상하였다.

##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59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광업권 양수도 계약이 실질적으로 B의 가장납입 자금의 인출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상호 불가분의 계약인 광업권 매매계약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정리하면서 계약금 등(선급금 100억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없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의 내용으로 보아 회사는 D로부터 선급금을 돌려받지 않는다고 약정한 것으로서,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아 선급금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400(감사위험의 평가와 내부통제)에 따르면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수준과는 무관하게 중요한 계정잔액과 거래유형에 대하여는 일정수준 이상의 입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계감사기준 620(전문가의 활용)에 따르면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동 전문가의 업무가 감사목적에 적절하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선급금이 회사의 중요 자산(총자산의 48%)이며, 회사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감사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선급금의 실재성 확인 등을 위하여 회사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회절차 및 계약의 이행 가능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또한 회사가 선급금 회수가능성 근거로 감사인에게 제시한

회사 대표이사의 비상장주식 증여계약은 선금금과는 별개의 거래이고 실효성도 없는 계약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 5. 시사점

연속 영업손실 등에 직면한 한계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의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할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기업의 유의적인 자금거래,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의 경우 충분한 감사증거 확인을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자산 등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회수가능액 추정 시 그 가정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